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연구윤리규정

2017년 12월 1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와 각종 출판물에 관계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에 투고한 논문투고자와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윤리규정 서약)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편집위원회는 특집 논문을 접수할 때는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논문 투고자나 편집위원, 심사위원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회장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공개한다.

제5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 ① 논문투고자는 사용하는 자료의 위조, 변조, 표절, 중복투고, 부당한 저자표기 등 제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행위를 말한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① (책임)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공정한 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위촉된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내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이 윤리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조사하고,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제재 조치를 의결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게 비공개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⑦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의 불허,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용 무효화,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⑧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 연구업적 관리기관에 통보하며,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제10조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학계의 관례에 따른다.
- ② 연구윤리규정 수정은 본 연구소 규정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